



보장성보험

무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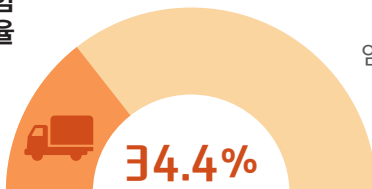
플랫폼경제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상해보험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2010



☑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왜 필요할까요?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비율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비율
71.6%

[출처 :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사고는 가깝고 보험은 멀다!

최소 2명중 1명은
자비 치료 경험 있다

퀵서비스 64%

대리운전 59.3%

화물운송 50.0%

플랫폼 택배 44.8%



[출처 : 2019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국인권위원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 교통재해장해급부금 500만원까지

중대수술, 중환자실입원, 응급실내원 등 의료비 집중보장!
한번 가입으로 1년 동안 맘 편히 지켜주는 맞춤형상해보험~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사망 보장

주계약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

장해 보장

주계약
교통재해장해급부금

500만원

수술 보장

주계약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

100만원

입원 및 내원 보장

주계약
교통재해중환자실입원급부금

1일당 3만원

주계약
교통재해응급실내원급부금

2만원

* 교통재해중환자실입원급부금의 경우는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 상기 내용은 주요 지급되는 보험금액만을 간략하게 예시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사항



보험기간
1년 만기



가입나이
만 19세
~ 60세



납입주기
연납
(한번의 납입)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정

주)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각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특약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00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007,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자격요건

업무상 이륜차운전자를 제외한 플랫폼경제 운송업종사자*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여 단속직(1회성, 비상시직, 비정기적) 일거리 건당 일정한 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수고용직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는 운송업 종사자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각 개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교통재해 장애급부금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교통재해 중환자실입원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3만원
교통재해 중대수술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교통재해 응급실내원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진료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3.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급부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특약명칭	특약내용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007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부지급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007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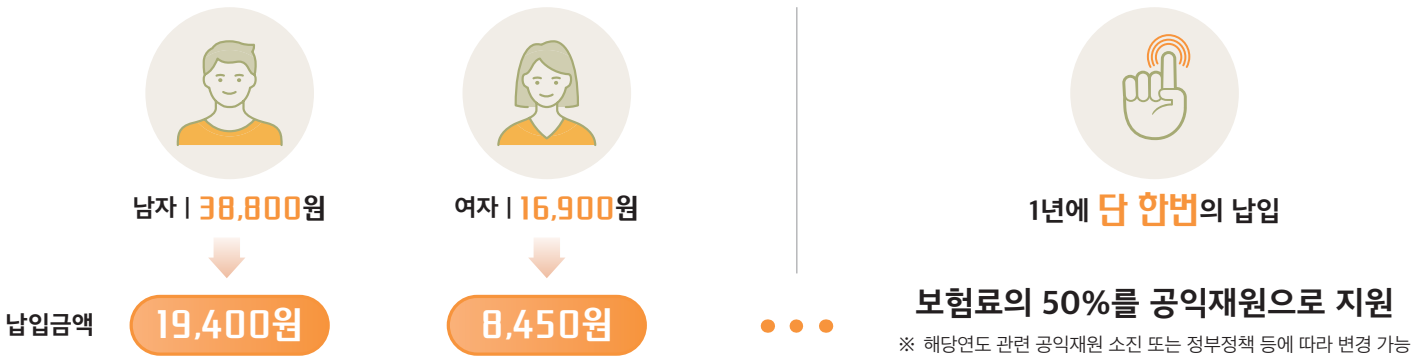
주)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007] 1.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합니다.

플랫폼경제운송업 종사자는 누구일까?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여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건당 일정한 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수고용직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는 운송업 종사자를 뜻합니다.



보험료 예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연납기준,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없음.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무)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2010 상세안내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모바일웹
m.postinsu.kr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 - 0100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취소제도 : 청약서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계약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환급금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6. 보장성보험은 관련세법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8.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보조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우체국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